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29 선고 2019가단1078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9. 2. 18.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2. 8. 24. 위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게 발급하였고, B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2019. 4. 2.경 C 주식회사의 부실(이자연체등)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6. 24. 기업은행에게 232,085,2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여기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까지 포함하면 C 주식회사와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은 232,060,014원이다.
 - 3) B은 2019. 2.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9. 2. 18. 접수 제15251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4)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0,151,460원이었는데, 채권자를 D조합(담보부 채권 29,000,000원)과 피고(담보부 채권 8,000만 원1))을 정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4. 17. 기준 시가는 109,076,380원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공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D조합, 함안군, F기관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을 매매로 보던 대물변제로 보던 마찬가지이다.2)

4)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08년 12월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19년 2월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여 그 돈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 단

1)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 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데, 의도나 의욕은 필요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를 해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18. ~ 19.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도저히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며, 빌려준 돈도 변제를 할 능력이 안된다’고 자신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한철

별지

목 록

1. 경남 함안군 G 대 281㎡
2. 경남 함안군 G
[도로명 주소]
경남 함안군 H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42.98㎡
시멘트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58.32㎡.끝.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B에게 2008년 12월경 8,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는 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자체가 B의 승인행위로 평가(이론적으로는 승인행위가 사해행위보다 선행할 수밖에 없다)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근저당부 채권의 잔액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에게 야기하는 공동담보의 부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